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공정무역행위 금지·시정조치사항 간 표현 통일 등>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39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및 시정조치 등	3
2. 시정조치 명령시 의견청취 범위 확대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28.
3. 회부연월일 : 2025.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 AI ·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입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복잡도 · 난이도가 증가 중임.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이후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어, 무역위원회 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개정추진을 제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 및 시정조치 중 하나로 광고 · 홍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는 광고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따라서,

법률 해석의 불명확성 해소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조항 및 시정조치 조항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

나.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 판정 전 해당 품목의 제재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시정명령 시 이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음. 그러나, 조사 품목 중 산업통상부 단독으로 관련 영향을 검토하기에 곤란한 경우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나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시정조치 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산업통상부장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다.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현행법은 시정조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행위의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공표 명령의 요건,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법률상 마련하여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및 시정조치 등

개정안은 현행법상 거짓·과장 ‘표시’ 외에 거짓·과장 ‘광고’도 불공정 무역행위로서 금지하도록 하고, 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 범위에 ‘정정 광고’ 외에 ‘정정표시’를 추가하며, 정정표시·광고 및 시정명령 사실 공표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3. ----- <u>거짓</u> <u>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한</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정조치) ① (생략)	제10조(시정조치) ① (생략)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3. 정정광고</u> 4. 5. (생략) ② (생략) <u><신설></u>	<u>3. 정정표시·광고</u>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정정표시·광고나 제1항제4호1)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현행법 제4조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총 4가지 유형을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표 2]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 <u>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u> ”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u>수입</u> 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u>판매</u> 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u>수출</u> 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u>제조</u> 하는 행위
--

1)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3.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리고 무역위원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수출입·판매·제조행위 중지 등의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음.

[표 3] 시정조치 유형

제10조(시정조치)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 정정광고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③ 삭제

그런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와 광고는 각각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일종인 ‘허위·과장표시가 있는 물품의 수출입행위’는 물품에 부착된 표시 내용이 허위·과장된 경우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허위·과장광고하는 경우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 표시·광고간 구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품질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도 공정한 수출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를 추가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현재 시정조치 유형 중 하나인 정정광고는 신문·방송 등을 통해 사실을 정정하는 방식만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과장 표시 물품의 수출입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수출입자가 사실관계를 정정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0조제3항은 정정표시·광고(제1항제3호) 및 사실공표(제1항제4호) 시정조치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개정안과 같이 침익적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율하고, 국민의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시행령에서 이미 시정명령 통지 등의 절차 및 방법, 반입배제 처분(제2호)시 관련 기관 협조요청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률상 위임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5] 현행 시행령상 시정조치 관련 조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 내용
2. 시정조치의 내용 및 사유
3. 시정 기한
4. 불복 방법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2. 반입배제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해외에서 해당 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공급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4. 향후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물품등이 수입될 경우에 반입배제 명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③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해당 행위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이 반입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정조치 명령시 의견청취 범위 확대

개정안은 무역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본문).

[표 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정조치)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u>산업통상부장관</u>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시정조치) ① ----- ----- ----- ----- -. ----- <u>관계 행정기관의 장</u> ----- -----.
1. ~ 5. (생략)	1. ~ 5.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생략)

현행법은 공정한 무역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조사 결과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이프가드 조치 등²⁾을 취할 수 있도록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① 무역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1. 관세율의 조정

2.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하고, 특히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취하는 중앙행정기관 장은 국제통상 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³⁾).

이에 비해 현행법 제10조는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세율 조정 등으로 해당 산업분야에 폭넓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비해 불공정무역행위 시정조치의 경우에는 특정 행위자를 대상으로 특정 물품의 수출입, 반입배제 및 폐기, 정정광고 등이 이루어지므로 산업통상부에서 일반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⁴⁾(무

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이프가드조치나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제통상 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

IV. 최종판정

3. 제재조치의 검토

가. 시정조치

○ 시정조치를 명령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관은 위원회 개최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대상 물품 소관과에 안전개요와 함께 시정조치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 동 의견을 조사검토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조사대상 소관품목 담당과가 없는 경우에는 무역정책과로 의견 조회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제출이 늦어져 동 의견을 조사검토보고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자료로 설명할 수 있음

역위원회 예규)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물품 소관과의 의견을 청취하되, 산업통상부 내에 소관품목 담당과가 없는 경우 무역정책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데, 무역정책과⁵⁾는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일반적인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과로서 특정 품목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산업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불공정무역행위 시정조치시 타 중앙행정기관 의견도 청취함으로써 해당 품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산업영향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5)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무역투자실)

⑦ 무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단기 무역정책의 수립·추진
2.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출입공고의 운영 및 국제화 추진
5.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행정규제의 완화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무역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조
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0. 전자무역 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11.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12.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